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32 발의연월일: 2021. 6. 10.

발 의 자 : 윤영석 • 권명호 • 박대수

박덕흠 • 백종헌 • 이채익

서범수・최형두・강기윤

구자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나,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지급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합당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 조치 이후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의 경우 대규모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등 심대한 어려움을 겪고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정부의 집합금지·제한 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업종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에 합당한 보상책 및 실질적인 재 정지원이 필요함.

이에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직전 3년간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과의 차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손실액(집합제한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직전 3년간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과의 차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여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매출 감소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 2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6(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을 받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1.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직전 3년간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과의 차액)의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2.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매출손실액(집합제한 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직전 3년간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과의 차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손실액의 산정과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6의 개정 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202 0년 1월 20일 이후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취한 조치로 인하여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6(감염병 재난에 따른
	손실보상) ①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
	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u>방역당국으로부터 「감염병의</u>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또는 집합제한 명령을 받
	아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매출손실액(집합금지 명령 기
	간 동안의 매출액과 직전 3년
	간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과
	의 차액)의 100분의 60 이상
	<u>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집합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매출손실액(집합제한 명령 기
	간 동안의 매출액과 직전 3년

간 같은 기간 매출액 평균과의 차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손실액의산정과 지급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